

춘천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52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52594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156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희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현영

변론 종결 2020. 11. 12.

판결 선고 2020. 11. 26.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156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0. 20. 접수번호 제248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중선

판사김현정

판사신흥호

별지